

이사회 규정

제정 1987.04.01
개정 1998.05.01
개정 1999.05.24
개정 1999.09.06
개정 2000.05.27
개정 2001.06.02
개정 2001.12.01
개정 2004.11.05
개정 2006.05.26
개정 2007.05.08
개정 2007.12.20
개정 2009.02.19
개정 2010.05.28
개정 2012.05.25
개정 2013.01.10
개정 2015.02.03
개정 2016.10.25
개정 2017.08.08
개정 2018.08.08
개정 2022.02.09
개정 2025.03.26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권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에는 1인의 간사를 둔다. 간사는 기획관할임원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의 사무를 담당한다.

③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⑤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위에 의한 직무대행권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6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
32조 제2항에 의한 직무대행권자가 소집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서면(별지 제
1호서식)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다른 결의방법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계자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 제39조 제4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하는 경우 포함)

라. 정관의 변경

마. 자본의 감소

바.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사. <삭제 2012.5.25>

아.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자.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차.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타.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이사회 결의만으로 현금·현물배당 결정하는 경우 포함)

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하. 법정준비금의 감액

가.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가. 경영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다. 이사 중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의 선임 및 해임

라. 공동대표의 결정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바.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사.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아. 중요한 사규의 제·개정

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차. 다음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09. 2.19>

- (1) 건당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하며 단기매매증권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 (2) 건당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 또는 1,000억원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처분
 - (3)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거나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카.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요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 및 인허가, 승인사항

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의 발행
- 나.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다. 준비금의 자본전입
- 라. 전환사채의 발행
- 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바. 실권주의 처리
- 사.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 아. 자기주식의 소각
- 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 가. 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나.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다. 타회사의 임원겸임
- 라.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마.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5. 기타 법령,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 부의사항이 전항 제2호 차목 (1), (2)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관리담당부서의 위험검토의견을 이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 이사회는 제11조 이외의 일상업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제13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0.25>

1. 경영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위험관리위원회

6. 내부통제위원회

7. 기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 신설된 위원회<개정 2009. 2.19>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결의방법, 부의사항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감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14조(위험관리)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한다. <개정 2009. 2.19>

제15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본사에 비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스크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은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